

의안번호 제1764호	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	---

1. 의안제출

- 가. 제출일자 : 2021. 5. 31.(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예비심사 : 2021. 6. 9.(화). 상임위원회
- 라. 회부일 : 2021. 6. 18.(금)
- 마. 심사일 : 2021. 6. 21.(월)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성 총괄

(단위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(가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나)
	계(나)=(다)-(라)	조성액(다)	사용액(라)	
2,224,987	7,206	50,380	43,173	2,232,193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3조

5. 검토의견 : 없음

관 련 법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

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13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
3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